

# 규제심사대상 확인

접수번호 : 제 2023-3721호

제 목 :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 
일부 개정

위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(를)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.

2023. 08. 18.

※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것으로, 이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,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

